■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6서식] <신설 2020. 12. 10.> (앞 쪽)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공통 기재사항	법인(영업소)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영업소)의 주소	전화번호
대행기관 정보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행기관 소속 직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 함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변호사법」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